

제목: 수리전 분석결과 고세율 회보 물품에 대한 처리 절차 안내

1. 수입신고 물품에 대한 수리전 분석 결과 고세율로 회보된 물품 (주로 농산물 등)을 계약 상이 등을 이유로 해외 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반송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2. 그러나, 일부 중소 수입업체의 경우 계약 상이 등을 입증할 계약서 등이 없어 수입신고 취하 및 반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24. 7. 31. 이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리전 분석 결과 고세율로 회보된 물품을 반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등이 없더라도 해외수출자의 반송동의서가 있으면 수입신고 취하 신청을 승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인천세관 통관검사2과 및 통관검사3과에 수입신고된 건에 한함.
3. 다만, '24. 8. 1. 이후 수입신고건 부터는 수입신고전에 작성된 계약서 및 해외 수출자의 반송동의서 등을 통해 계약과 상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취하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수입신고 취하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계약서, 반송동의서 등 증빙자료를 가공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허위신고죄 등으로 처벌합니다.